

호명면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1. 26. ~ 1. 29.(4일간)
-  감사범위 : 2014. 1. 21 ~ 2016. 1. 25까지 업무전반
-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32건(주의 7, 시정 9, 현지시정 16)
 - 본 처분 16건(주의 7, 시정 9)
- 재정상 조치
 - 4건 2,115천원(회수 4건 2,115천원)

지적사항 일람표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구분	금액(원)
계	호명면	16건	주의 시정	회수4 / 2,115,000	
1	총무담당	이장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2	"	읍면예산 및 재배정 현금출납부 불일치	주의		
3	"	신용카드 유지 관리 미흡	시정		
4	"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	시정		
5	"	민원서류 처리기간 경과 처리	주의		
6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상품권 수령인 관리 소홀	주의		
7	"	쓰레기종량봉투 무상지급 관리소홀	주의		
8	"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리 배수로 설치)	시정	회수	350,000
9	"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 농로포장)	시정	회수	1,250,000
10	"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 농로포장)	시정	회수	278,000
11	"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지구 농업용수 관로)	시정	회수	237,000
12	민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 부적정	주의		
13	"	주민등록 일제정리 소홀	주의		
14	산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구비서류 과다 징구	주의		
15	"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지 사후관리 업무소홀	시정		
16	"	채소특작분야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사후관리 미흡	시정		

주요지적사항

-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통·이장 변경 시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장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였음.
 - ▶ 보수 지급일 기준 일할계산 하지 않고 지급한 수당에 대하여 정산 지급 하고 향후 이장 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106조(출납의 정리구분)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제120조(세입세출일계표)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금고 지출 대행점은 세입세출 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세입세출 일계표에 의한 현금출납부의 일일결산을 소홀히 하여 통장잔액과 현금출납부가 불일치함.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 대장에 반드시 등재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

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용카드발급상황을 현행화하지 않았음.

- ▶ 신용카드발급상황을 현행화 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예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차량 관리방법) 및 제25조(기록 관리)에는 단위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차량유지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소차 운영관리에 필요한 차량정비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음.

- ▶ 청소차 차량정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 관리하도록 시정 요구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서를 처리함에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 외 4건의 신고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처리 기간인 3일을 경과하여 처리함.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가정 및 사업 등에서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라 이를 온실가스 감축률로 환산한 포인트 발생량을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상품권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수령한 상품권을 인센티브 지급대상자에게 교부하여 수령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 하반기에 인센티브로 지급된 상품권 수령인이 불분명하게 확인받았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예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수수료의 감면) 및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수수료의 감면)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가구당 매월 일반용120 l(1인가구 60 l)와 음식물 30 l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2015년 1분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상지급하면서 수급대상자와 수령인이 일치하지 않게 수령 확인함.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적용기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 2014.03.05 ♡♡건설(주) 김■■■과 계약한 △리(●●●) 배수로설치공사에 대하여 현장여건상 버림콘크리트를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350,0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음.

▶ 과다 지급된 공사비 35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2015.03.09.△△건설(주) ★★★와 계약한 ○○(■■■) 농로포장 공사 설계내역에 콘크리트포장 및 양생 품이 중복 계상 되었으나, 별도의 조치없이 준공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1,250,0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음.

▶ 과다 지급된 공사비 1,25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2015.03.09. ▲▲▲▲(주) □□□와 계약한 ★★(♡♡)농로포장공사 설계내역에 집수정을 직접 타설하여 시공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성제품을 구입하여 시공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278,0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음.

▶ 과다 지급된 공사비 278,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2015.03.27. ♣♣♣♣(주) ○○○과 계약한 논실지구 농업용수 관로설치 공사 설계내역에 공사설명판을 시공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준공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237,0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과다 지급된 공사비 237,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 변경, 생년월일의 변경, 용모 변경 등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에 의하면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있음에도 배○○에 대하여 성명변경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하여 발급하였고, 장■■■ 외 1명에 대하여는 신청인 서명 누락과 수수료 미소인 함.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하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등을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 2014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등록일제정리 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세대주 및 이장확인 누락과 조사자 확인 누락 등 업무에 소홀히 하였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이 1,000㎡미만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14~2015년중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9명으로부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첨부토록 하여 구비 서류 과다 징구하였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농지법 제3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조건을 부한 농지 전용허가 및 협의 건에 대하여는 협의조건대로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예천군 농정과-16115(2015.10.18.)호의 공문에 의하면 농지전용협의를 한 농지에 대하여 현장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허가사항 외 연접부지가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에 협의된 농지전용 협의건(예천군 농정과) 4건에 대하여 현장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점검·지도한 사실이 없는 등 사후관리 업무에 소홀히 하였음.

▶ 농지전용 협의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 관리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산 농산물의 시중 유통으로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채소·특작분야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채소·특작분야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읍·면에서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비치 하여 활용 상태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2014~2015년 사업완료 이후 지원된 장비에 대하여 활용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

▶ 채소·특작분야에 지원된 장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전담 책임자를 지정 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